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298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나경원  
이인선 · 김태호 · 구자근  
고동진 · 박충권 · 정동만  
안철수 · 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

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5호자목 신설).

법률 제 호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p> <p>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p> <p>가. ~ 아. (생략)</p> <p><u>&lt;신 설&gt;</u></p> <p>②·③ (생략)</p> | <p>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p> <p>① -----<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br/>-----<br/>-----</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자. 「노인복지법」 제36조에<br/><u>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u></p> <p>②·③ (현행과 같음)</p> |